

# 소 장

원 고 ㅇㅇㅇ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 수표금청구의 소

## 청 구 취 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〇〇. 〇〇. 〇〇.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 구 원 인

1. 피고는 다음 기재내용와 같은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한 발행인입니다.

가계수표의 내용

- (1) 발행일 : 20 0 0. 0. 0.
- (2) 발행지 : ○○시

(3) 지급지 : ○○은행 ○○지점

(4) 액면 : 금 10,000,000원

(5) 수표번호 : 가라78762590

2. 원고는 위 가계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위 가계수표를 20〇〇. 〇〇. 〇. 지급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거절 되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가계수표의 액면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가계수표를 지급은행에 지급제시한 다음날인 20〇〇. 〇〇. 〇〇.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수표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계수표

###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ㅇㅇㅇ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및 기 간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수표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수표 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
	져야 하고 수표는 원인관계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수표상의 권리를 표창
	하는 증권이므로, 수표의 소지인은 소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가 어떠한 실제적 이익을 가지는지 입증하여
	야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98. 5. 22. 선고 96다52205 판결).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발행일로부터 10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함(수표법 제29조 제1항, 제4항).
	·수표의 지급인은 지급을 할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수표에 영수를 증명
	하는 기재를 하여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수표법 제34조 제1항).
	・소지인은 소구권에 의하여 ①지급이 되지 아니한 수표의 금액, ②제시
	일 이후의 연 6%의 이율에 의한 이자, ③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의 비용통지비용과 기타의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수표법 제44조).
	·가계수표 용지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100만원 이하' 등의 문언은
	지급은행이 사전에 발행인과의 사이에 체결한 수표계약에 근거하여 기
	재한 것으로서 이는 단지 수표계약의 일부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수표 문면에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고, 한편 수표법 제3조 단
	서에 의하면 수표자금에 관한 수표계약에 위반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
	에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발행한도액을 초
	과하여 발행한 가계수표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수표 표면에 '100만원 이하'라고 인쇄된 가계수표용지에 발행인 스스로
	발행한도액을 초과하여 '15,000,000'원으로 액면금을 기재하여 제3자에게
	발행한 수표를 소지인이 배서양도 받은 경우, 발행인으로서는 소지인이
	당해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발행인에게 발행한도액을 초과한 경위를 확
	인하지 아니한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표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음(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8319 판결).

#### ※ (1) 관 할

-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어음 · 수표에 관한 소는 그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9

조).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수표의 <sup>5</sup>, 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